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94. 10. 29

나. 회부일자 : '94. 10. 29

3. 제안이유

- ① '94. 6. 29일까지 관광지조성계획 승인권은 교통부장관으로 되어있고,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 신청권은 도지사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 ② '94. 6. 30일자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위임 되므로써 “승인권자와 신청권자가 동일인”이 되는 모순이 있으므로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추진을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승인 신청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변경 승인)신청

## 5. 검토의견

충청북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종전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의 건은 교통부장관으로 되어있고,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 신청권은 도지사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94. 6. 30일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광지조성계획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승인권자와 신청권자가 동일인”이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 신청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6. 첨 부

- 충청북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 조문대비표